

## [ 정 정 대 비 표 ]

###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편 드 명	BNK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li> <li>-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li> <li>-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li> <li>-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li> </ul>
효 력 발 생 일	2023년 06월 12일

### ■ 정정대비표

####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문구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u></li> <li>- <u>비우량채권</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li> <li>- <u>고위험고수익채권</u></li> </ul>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p>1. ~ 10. (생략)</p> <p>11.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이 중 자산총액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u>비우량채권</u>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을 미충족시에는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배정 관련 제도는 정책에 의거 <u>2023년 12월 31일</u>부로 일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u>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u> 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1. ~ 10. (현행과 동일)</p> <p>11.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으로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이 중 자산총액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u>고위험고수익채권</u>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을 미충족시에는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배정 관련 제도는 정책에 의거 <u>2025년 12월 31일</u>부로 일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은 2023년 0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이상 3년이하)</u>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가입금액 3천만원</u>까지만 분리과세(단, 가입 1년 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p>

		<p>12. <u>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비우량채권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합니다.</u> 비우량채권은 상대적으로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매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는 등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기업의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악화 등으로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하거나 매각이 용의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 및 상환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p>	<p>세액 추정함) 되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12.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고위험고수익채권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합니다.</u> 고위험고수익채권은 상대적으로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매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는 등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기업의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악화 등으로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하거나 매각이 용의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 및 상환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p>
--	--	---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p>·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u>으로서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이를 포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45% 이상을 <u>비우량채권</u>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재산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공모주 등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가목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으로서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이를 포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45% 이상을 <u>고위험고수익채권</u>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재산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공모주 등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p>
운용전문인력	-	-	- 2023.05.15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자 유의사항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p>·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u>으로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이 중 자산총액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u>비우량채권</u>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p>	<p>·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으로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이 중 자산총액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u>고위험고수익채권</u>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p>

		<p>투자비용을 미충족시에는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배정 관련 제도는 정책에 의거 <u>2023년 12월 31일</u>부로 일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u>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u> 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로 상기 투자비용을 미충족시에는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배정 관련 제도는 정책에 의거 <u>2025년 12월 31일</u>부로 일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u>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은 2023년 0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이상 3년이하)</u>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가입금액 3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단, 가입 1년 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함) 되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주요투자위험	문구 조정	<p>-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과세	문구 추가, 분리	- <문구 추가>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p>- &lt;문구 추가&gt;</p> <p>- &lt;신설&gt;</p>	<p>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p>-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2023년 0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1년이상 3년이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가입금액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됩니다.</p>
--	-----------------------	--	---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문구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p>- <u>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u></p> <p>- <u>비우량채권</u></p>	<p>-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p> <p>- <u>고위험고수익채권</u></p>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p>1. ~ 10. (생략)</p> <p>11.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이 중 자산총액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u>비우량채권</u>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을 미충족시에는 공모주 청</p>	<p>1. ~ 10. (현행과 동일)</p> <p>11.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으로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이 중 자산총액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u>고위험고수익채권</u>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을 미충족시에는</p>

		<p>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배정 관련 제도는 정책에 의거 <u>2023년 12월 31일부로</u> 일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u>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u></p> <p>12. <u>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비우량채권에</u>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합니다. <u>비우량채권은</u> 상대적으로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매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는 등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기업의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악화 등으로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하거나 매각이 용의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 및 상환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p>	<p>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배정 관련 제도는 정책에 의거 <u>2025년 12월 31일부로</u> 일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u>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은 2023년 0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이상 3년이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가입금액 3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단, 가입 1년 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함) 되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p> <p>12.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고위험고수익채권에</u>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합니다. <u>고위험고수익채권은</u> 상대적으로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매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는 등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기업의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악화 등으로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하거나 매각이 용의하지 못하여 수익증권의 환매 및 상환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p>
--	--	---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u>으로서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li> <li>·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이를 포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4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가목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으로서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li> <li>·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이를 포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45%</li> </ul>

		이상을 <u>비우량채권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재산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공모주 등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u>	이상을 <u>고위험고수익채권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재산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공모주 등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u>
운용전문인력	-	-	- 2023.05.15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자 유의사항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u> 으로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이 중 자산총액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u>비우량채권</u> 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을 미충족시에는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배정 관련 제도는 정책에 의거 <u>2023년 12월 31일부로 일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u>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 으로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이 중 자산총액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u>고위험고수익채권</u> 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을 미충족시에는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배정 관련 제도는 정책에 의거 <u>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부여되는 분리과세 혜택은 2023년 0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이상 3년이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가입금액 3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단, 가입 1년 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함) 되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주요투자위험	문구 조정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u>

		<p>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설정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과세	<p>문구 추가,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p>	<p>- &lt;문구 추가&gt;</p> <p>- &lt;문구 추가&gt;</p> <p>- &lt;신설&gt;</p>	<p>- <u>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p> <p>- <u>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u></p> <p>-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2023년 0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1년이상 3년이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 가입금액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됩니다.</u></p>
<b>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2. 집합투자기구의	-	-	- 2023.06.12: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

연혁			레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조정,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2023.05.15 기준으로 업데이트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u> 으로서 국내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혼합채권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가목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 으로서 국내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혼합채권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가. 투자 대상 <신설>  ①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 <u>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u> 」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①-1 비우량채권: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평	가. 투자 대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u>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u> 으로서 국내 자산에만 투자합니다.  ①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u>전자증권법</u>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고위험고수익채권] <u>신용등급(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평가</u>

		<p>가등급이 BBB+(「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A3+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하며,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채권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p> <p>① ~ ①-1: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p> <p>1. &lt;신설&gt;</p>	<p>등급을 말한다)이 BBB+이하(전자증권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에는 A3+이하)인 사채권(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이라 한다)</p> <p>①-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이며 이에 따른 평균보유비율 계산할 때 채권의 신용등급은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해당 채권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하며, 매 분기 종료일에 산정한다.</p> <p>1.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날의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은 해당 목에서 정한 비율로 본다.</p> <p>가.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이하)인 사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45</p>
--	--	--	--

		<p>2. &lt;신설&gt;</p> <p>② ~ ⑦ (생략)</p> <p>⑧ 증권의 대여 &lt;주식 추가&gt;</p> <p>⑨ 증권의 차입 &lt;주식 추가&gt;</p> <p>⑩ ~ ⑪ (생략)</p> <p>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lt;생략&gt;--- 아니합니다.</p> <p>① ~ ⑨ (생략)</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가. 투자대상 ①~①-1의 단서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미만인 경우 : 100분의 45</p> <p>나. 가목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 100분의 60</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만기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분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일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그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해당 분기의 평균보유비율로 한다.</p> <p>② ~ ⑦ (현행과 동일)</p> <p>⑧ 증권의 대여</p> <p>주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p> <p>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p> <p>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p> <p>⑨ 증권의 차입</p> <p>주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p> <p>⑩ ~ ⑪ (현행과 동일)</p> <p>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lt;생략&gt;--- 아니합니다.</p> <p>① ~ ⑨ (현행과 동일)</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가. 투자대상 ①~①-1의 단서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2. (현행과 동일)</p>
--	--	--	--

		3. 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u>비우량채권</u> 의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45% 또는 60% 미만인 경우 이를 각각 45% 또는 60%로 본다.	3. 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u>고위험고수익채권</u> 의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45% 또는 60% 미만인 경우 이를 각각 45% 또는 60%로 본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가. ~ 나. (생략) 다. 기타 투자위험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 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험 추가>  라.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기타 투자위험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 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u>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u>  라. (현행과 동일)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1) ~ 2) (생략) 가.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신설>	1) ~ 2) (현행과 동일) 가. (현행과 동일)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u>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내역</u>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문구 조정,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p>	<p>가. 이익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u>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u></li> </ul> <p>(이하 생략)</p> <p>나. 과세</p> <p>투자소득에 ---(<u>생략</u>)--- 나누어집니다.</p> <p>(1) ~ (3) (<u>생략</u>)</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C-Pe, S-P 및 J-Pe 가입자</p> <p>[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령요건: 55세 이후 <u>10년간</u>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납입금액]</li> <li>-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li> </ul> <p>① <u>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u>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p> <p>② <u>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u> 이내</p> <p>③ (<u>생략</u>)</p> <p>[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li> </ul>	<p>가. 이익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지급일의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기준 가격으로 당해 <u>종류</u>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li> </ul> <p>(이하 <u>현행과 동일</u>)</p> <p>나. 과세</p> <p>투자소득에 ---(<u>생략</u>)--- 나누어집니다.</p> <p>(1) ~ (3) (<u>현행과 동일</u>)</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C-Pe, S-P 및 J-Pe 가입자</p> <p>[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령요건: 55세 이후 <u>&lt;삭제&gt;</u>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납입금액]</li> <li>-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li> </ul> <p>① <u>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u> 이내. <u>&lt;삭제&gt;</u></p> <p><u>&lt;삭제&gt;</u></p> <p>② (<u>현행과 동일</u>)</p> <p>[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천 500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li> </ul>
------------------------------	---	--	--

		<p>-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 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lt;신설&gt;</p> <p>(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C-P2e, S-P2 및 J-P2e 가입자</p> <p>- 세액공제:</p> <p>-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u>400만원</u> 이내의 금액)과 연 <u>700만원</u>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u>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u></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p>	<p>-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 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u>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u></p> <p>(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C-P2e, S-P2 및 J-P2e 가입자</p> <p>- 세액공제:</p> <p>-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u>600만원</u> 이내의 금액)과 연 <u>900만원</u>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lt;삭제&gt;</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p>
--	--	--	---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천만 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u>&lt;신설&gt;</u>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천 500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u>(6)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하단 &lt;신설&gt; 참조)</u>
--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가. 요약재무정보 - <항목 추가>	가. 요약재무정보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율>
---------	----------------	------------------------	--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2023.05.15 기준으로 업데이트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2023. 04. 03 실행)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생략)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생략)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 ② (생략)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이하 생략)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u>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u>  - 주소 및 연락처: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22층 ☎ 02-2168-0400</u>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현행과 동일)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현행과 동일)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u> (이하 현행과 동일)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u>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u>  - 주소 및 연락처: <u>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68-0400</u>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shinhanaitas.com">www.shinhanaitas.com</a> (2) (생략) 다. ~ 라. (생략)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shinhanfundpartners.com">www.shinhanfundpartners.com</a> (2) (현행과 동일) 다. ~ 라. (현행과 동일)
<b>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b>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p>-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는 제외)</p> <p>-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이하 생략)</p>	<p>-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u>법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법 시행령 제224조의2</u>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p>-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이하 현행과 동일)</p>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문구 조정	<p>가. 정기보고서 (생략) 나. 수시공시 (1) (생략)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1. ~ 7. (생략)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p>	<p>가. 정기보고서 (현행과 동일) 나. 수시공시 (1) (현행과 동일)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1. ~ 7. (현행과 동일)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p>

	<p>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10. (생략)</p> <p>(3) (생략)</p>	<p>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10. (현행과 동일)</p> <p>(3) (현행과 동일)</p>
--	--	--

<신설>

(6)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구분	주요 내용
가입 자격	가입제한 없음
가입 기한	거주자가 2023.06.12일부터 2024.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계약 기간	- 1년 이상 -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
가입 금액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가입금액 3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
세제 혜택	펀드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단, 가입 1년 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함)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환매시 분리과세 적용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2.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취급기간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